

2019년 8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김지호(2072)/ 제공일: 8월 15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미얀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'19년 8월 14일 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 산 주(Shan State)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보고함에 따라,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-ray 검색, 검역탐지견 투입,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.

* 미얀마 정부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'19.8.14일 긴급발생 보고(산 주 1건)

- 미얀마 정부는 산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미얀마는 살아있는 돼지,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 한국으로의 수입금지 국가

-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함께 태국,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-ray 검색, 탐지견 투입을 강화해 왔으며, 이번에 미얀마에서 ASF가 발생하여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확대(1편/주 → 7편)하여 실시키로 하였다(8.15~).

○ 또한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,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.

* 과태료 부과 현황 : 16건(한국3, 중국5, 우즈베키스탄3, 캄보디아2, 태국1, 몽골1, 필리핀1)